

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(2021. 12. 17.)
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
공포한다.

2021년 12월 29일

목포시의회의장 박 창 수  

목포시의회 규칙 제9호

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

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방지치법 시행령 제6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
59조”로 하고, “목포시의회(이하 의회 라한다)”를 “목포시의회”로 한
다.

제2조 중 “의회”를 “목포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의원”을
“의원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의장”을 ““의장”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재적의원 1/3”를 “재적의원 3분의 1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목포시의회(이하 의회 라한다)</u>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 시행령</u>」 제59조----- <u>목포시의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청원서의 제출) ①<u>의회</u>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<u>의회 의원</u>(이하 <u>의원</u> 이라 한다)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청원서의 제출) ①<u>목포시의회</u>(이하 “<u>의회</u>”라 한다) ----- “<u>의원</u>”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 (청원서 보완요구) <u>의회의장</u>(이하 <u>의장</u> 이라 한다)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구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 (청원서 보완요구) ----- ----- “<u>의장</u>”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심사보고)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</p>	<p>제11조(심사보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또는 제적의원 1/3이상의 요구가
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
에 부의하여야 한다.

-- 재적의원 3분의 1 -----

-----.